

『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시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(안 제12조제2항제2호)
 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: 50퍼센트 감면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국가보훈대상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저출산 시대 출산,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
-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국가보훈처의 ‘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’에 따라 의무 감면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-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 확대는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과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,
- 사용료 감면을 통해 시설활성화 및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